

특별조건부특약

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

이 유 서

최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 및 장애등급분류표의 개선에 따라 기존의 특별조건부 특약을 변경개발하여 인가를 신청합니다.

2005년 3월 일

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

확 인 서

특별조건부특약을 변경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

2005년 3월 일

금 호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대 표 계 리 인 심 영 섭

사업방법서

(별지)

사업방법서

1. 보험종목의 명칭 : 특별조건부특약
2.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가입나이 : 주계약에 따름
3. 보험기간 : 주계약에 따름
4.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: 진단계약
5. 부활(효력회복)기간 : 해당없음
6. 배당에 관한 사항 : 주계약에 따름
7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8. 부가특약 : 해당없음
9. 기타
 - (1) 할증보험료법 적용시 위험지수에 대한 의적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 - (2) 2종류 이상의 위험지수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표준미달체 영업보험료의 5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(기준연령 기준)내에서 위험지수를 일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(별첨 제1호)

보험증권의 서식

(별첨 제2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